

일상감사 대상 및 처리절차

□ 관련근거

-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0조 ~ 27조

□ 일상감사 대상

1. 기본사업계획 수립과 주요방침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소송사무처리 내규 제4조의 중요한 소송과 화해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
4. 예산의 편성·전용·이월 및 예비비 지출과 자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매건당 1,000,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잡비의 지출
6. 매건당 5,000,000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(전도자금선급금개산금 포함)의 지급
7. 추정가격 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제 계약의 체결 방침 및 계약의 중요변경에 관한 사항
8.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중 현업기관의 전결사항으로 감사부서의 장이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제외할 수 있다.
9. 결산, 가결산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
10. 중요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
11. 회계단위의 설정과 폐쇄
12. 내규 제5조(지도점검계획 사전검토)에 관한 사항

□ 일상감사 처리절차

